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합56975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A

2. B

3. C

변론 종결 2018. 4. 4

판결 선고 2018. 4. 1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88,410,576[^] 및 그 중 288,231,246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7. 10. 2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17. 5. 23. 체결된 증여계약,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17. 3.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A에게,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2017. 5. 23. 접수 제1776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C은 같은 법원 2017. 6. 5. 접수 제1987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2항 및 제2의 가.항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17.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금 채무의 발생

원고는 2016. 10. 31. 'D'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A와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원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¹⁾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함께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의 기한의 이익 상실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는 2017. 9. 14. 원금 연체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 28.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그 때까지의 대출원리금 채무 289,227,25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996,01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88,231,246원이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고,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확 정손해금은 272원이며,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179,058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는 2017.5. 23. 그의 처인 피고 B에게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7. 6. 5. 피고 C에게 2017. 3.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A의 무자력

피고 A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계약 체결 당시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3억 2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 등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88,410,576원(= 대위변제금잔액 288,231,246원 + 채권보전비용 179,058원 + 확정손해금 272원) 및 그 중 288,231,246원에 대하여 2017. 9. 28.(대위변제일)부터 2017. 10. 27.(소장 송달일)까지 연 10%(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그 무렵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 4. 14. 선고 2006 다 5710 판결, 대법원 2001 . 4. 24. 선고2000다41875판결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A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와 피고 B의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을 부담한 실질적 소유자이므로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을가 제1내지 3호증의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판결),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은 등기일자가 아닌 등기원인일자인 2017. 3. 2.

기준으로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C만 우선변제를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피고 A의 사해의사와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C 명의 근저당권등기는 각 말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 판사 강하영 판사 신세희

별지

1)① 보증원금 108, 000, 000원,보증기한 2017 . 10. 30., ② 보증원금 54, 000, 000원,보증기한 2018 . 5. 25., ③ 보증원금36,000,000원,④ 보증기한 2018. 5. 25., 보증원금 90,000,000원,보증기한 2017. 10. 30.